

5.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27號 1993. 6. 1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축법시행령 제10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을 “육외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로 한다.

제2조의2중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영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당해 건축물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토지로 한다)안에”를 “건축물의 내부에”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 제2항) 본문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①영 제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 택지취득

변경허가신청서 및 택지사용계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조건)영 제10조제6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택지소유자의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해외이주·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대차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중 “영 제10조제12호”를 “영 제10조제14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시장·군수”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중 “장학법인”을 “학교법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6호중 “장학사업”을 각각 “교육 또는 장학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수익금”을 “수익금(처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장학사업”을 “교육 또는 장학사업”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장학사업”을 “교육 또는 장학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다른 장학법인에”를 “교육 또는 장학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에게”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영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단서”를 “영 제18조제2항제1호 단서·영 제19조 단서 또는 제3조의2 단서”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본문중 “영 제26조제1항제10호”를 “영 제26조제1항제12호”로, “건축허가”를 “건축”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불가능한 사유등”을 “불가능한 사유 또는 이주·집단화 사유등”으로 한다.

다만,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는 관할 시장·군수가 이주·집단화된 것을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

8.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기간중에 있는 택지

9.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시 이주하거나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 있는 택지로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택지

제11조의2제1항중 “시·군·구별 변동율”을 “시·군·구별 변동율(시·군·구별 변동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별 변동율)”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택지가격산정의 특례) 개별 필지의 택지가격이 결정된 후 당해 택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군수가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택지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영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의 택지가격을 산정한다.

1. 택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전 택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택지가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된 택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가격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합병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및 [별지 제16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규칙(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1993. 5. 10. 대통령령 제12,882호)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조건으로서의 최저기간 및 택지사용계획서의 서식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 및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내의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옥외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축물에 포함시켜 그 부속토지를 나대지에서 제외함(제2조).
- 나. 주택임대업자등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당해 주택을 임대하도록 하고, 해외이주·파산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 다.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나대지 및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임시 이주되거나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의 택지로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택지를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9조의2).
- 라.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의 가격산정에 있어서 택지의 분할·합병으로 개별택지가격을 새로 정하여야 할 때에는 분할·합병전의 개별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제11조의3).

<건설부 제공>